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4. 6. 14.)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하 나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4-67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24일(금)

라. 회부일자: 2024년 5월 28일(화)

2. 제출사유

마포구 방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 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으로 재위탁 사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 품 질 향상 및 구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 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 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2조

2) 추진 필요성

- 관광안내소 운영은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외국어 지원 및 편의 제공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함
- 관광 분야 수행실적이 뛰어난 업체에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를 위

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안내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통합 운영 및 관리

- 관광정보 제공·안내, 홍보물 배포·관리 등 관광안내 관련 업무
- 관광통역 안내원 선발·관리, 정기적 전문화 교육 실시
- 장비 및 비품 관리, 위생 및 청결, 보안 유지 등
- 그 외 기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마포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1) 시설 운영현황

- 마포관광안내소

구 분	내 용		
위 치	●마포구 홍익로 22(서교동)		
운영시간	●10:00 ~ 19:00 (연중 무휴)		
외국어지원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서비스 내 용	●내방 내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 - 마포구 및 서울시 주요 관광지 관광정보 제공 - 교통·숙박·쇼핑·음식점 등 관광문의 안내 ●게스트하우스 예약 등 편의서비스 제공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등		

- 차량이동형관광안내소(홍카)

구 분	내용
운 영 일	• 월 15회
운영시간	• 11:00 ~ 18:00 - 행사지원, 계절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가능 - 야간활동 시 오후 15시~오후 21시
운영장소	• 마포구 주요 관광명소 및 레드로드페스티벌, 새우젓 축제 등 행사장 (레드로드 R2, R5, R6)
서비스 내 용	찾아다니는 이동형 안내서비스 구변 교통·숙박·쇼핑·음식점 등 관광 안내 및 관광컨설팅 마포구 관광 홍보 현수막, 어깨띠 홍보 캠페인, 마포구 홍보물 배부, 관광 추천 및 안내

2) 인력 운영현황

연번	담당자	직위	구 분	업무내용
1	차병철	센터장	사업총괄	·위탁사업 총괄, 회계책임자
2	신동찬	팀장		·현장 운영 업무 총괄 관리 ·관광통역/안내업무/홍카운전 (영어)
3	김수영	사원	관광통역	·관광통역/안내업무/홍카운전 (일본어)
4	이지은	사원	안내사	·관광통역/안내업무 (영어)
5	윤다연	사원		·관광통역/안내업무 (영어)
6	박계향	사원		·관광통역/안내업무 (중국어)

마. 위탁현황

1) 수탁기관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채보영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49	02-332-3966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근거 및 기간

1)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2022.1.1. 개정)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2016년 공개경쟁입찰 후 재계약 또는 재위탁

아. 소요예산 : 227,225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8조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24.12.31.)인「마포 구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 · 관리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3
 년간 재위탁('25.1.1.~'27.12.31.)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임.
- 다만, 본 동의(안)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재위탁"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본문) 하는 것과 달리,
- "해당 사무(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u>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u>"(「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u>단서1)</u>)에 해당하여 "재위탁"임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의 운영 업무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²)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 종합관광안내소³)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보에 대한 기본적 인 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등 특수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

¹⁾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u>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u>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

²⁾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³⁾ 서울 내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지역은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도봉구,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등 10개임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자료 참고

단되므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됨.

-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은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왔고 위 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비용절감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국내외 관광객에
 게 전문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재정 능력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동 사업의 설립 및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시기는 2016년부터이며 이후 마포구는 동 시설의 운영을 "(주)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에 최초 위탁하였고 2021년 현 위탁기관인 "(사)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구의회의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

[표 1.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현황]

차수	위탁기간 위탁유형		수탁기관	비고
1차	2016.1.1 .~2018.12.31.	최초 위탁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최초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를 받지 않음
2차	2019.1.1.~2021.12.31.	재계약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3차	2022.1.1. ~2024.12.31.	재위탁	사단법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협회	최초 위탁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구의회 보고로 갈음함

[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현황]

조례 개정일	개정 조항
<u>2015. 9. 24.</u> (구의회 동의 신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전에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5.9.24.>
2021. 5. 6. (6년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 신설)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

-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수 있다."라고 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제1항은 "구청장은 …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시행함.
- 단체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해당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 법령의 입법목적은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자 선정 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러한 법령의 위반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 추진 경위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사유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붙임 1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 구의회 동의 [P47] ≫

	구 분	재위탁(공개모집)	재위탁(수의협약)	재계약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지속필요성(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결정				
	•	•				
2	구 의 회 동 의	구의회 동의 ►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 의회 동의 받은 이후 6년 경과 마다 의회 동의 필요 ► 조례 §6① 의회 동의안 제출 ►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 → 구의회 동의 배제				
	•					
3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성과평가 결과 심의 ► 시정요구 결과 반영 ► 재계약 적정성 심의		
	+		•			
4	수탁기관 선 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_			
	•	•				
(5)	재위탁·재계약	재위탁·재계약 협약 체결				
o	협약체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	+	•				
6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등				
	•	↓				
7	사 후관 리와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지도·점검(감독), 감사: 필요 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반기별 1회) 이상 성과평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재위탁·재계약: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반영 				

붙임 2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업무를 관광 분야에 전문 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0.7.9〉, 〈단서신설 2020.7.9〉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워할 수 있다.〈신설 2015.9.24〉.〈개정 2020.7.9〉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7.9.〉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